

예 산 총 칙

2013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1,217,700,000 | 36,531,000 |
| 일반회계 | 1,010,200,000 | 30,306,000 |
| 특별회계 | 207,500,000 | 6,225,000 |
| 공기업특별회계 | 142,300,000 | 4,269,000 |
| 하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| 90,100,000 | 2,703,000 |
| 상수도공기업사업특별회계 | 52,200,000 | 1,566,000 |
| 기타특별회계 | 65,200,000 | 1,956,000 |
| 주택사업특별회계 | 691,000 | 20,730 |
|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| 11,090,000 | 332,700 |
|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| 1,650,000 | 49,500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7,070,000 | 212,100 |
| 치수사업특별회계 | 1,230,000 | 36,900 |
|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| 1,380,000 | 41,400 |
| 청소사업특별회계 | 38,400,000 | 1,152,000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| 1,230,000 | 36,900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| 300,000 | 9,000 |
|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| 2,159,000 | 64,770 |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액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,772,977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4,003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와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공무원보수,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
2. 공공요금 및 제세, 급량비, 직무수행경비
3. 배상금, 국선변호료, 법정보상금
4. 지방채원리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
5. 재해대책비 및 복구경비
6. 반환금
7. 선거관련경비